

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6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6.15) 상정 · 의결(보류)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청소대행업체가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키고, 청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현재 부과하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중
 - 기본 부과금액을 17,680원에서 18,800원으로,
 - 초과시 부과금액을 1,170원에서 1,360원으로 인상 조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흥기서 위원의 심사보류안 동의

6. 審査保留案의 要旨

- 우리구는 제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현재 지역경제 사정도 어려운 시기이어서 급히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함.

7. 審 査 結 果 : 심사보류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로 가결함)

200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 審 査 報 告 書

2005. 6. 15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2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5. 6. 15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 연 수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명륜3가 1-29번지 위치에 현재 평면주차장으로 같이 사용중인 재정경제부 소유 명륜3가 1-806번지와 명륜3가 1-269번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함으로써 주차 및 토지 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민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